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계획

마포구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와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및 마일리지 운영 등의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여 우리구 인터넷시스템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□ 관련 법규 등 검토

### ○ 행위제한 근거

- 「공직선거법」 제86조(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)  
(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 (기부행위의 정의 등)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)  
- 이벤트 및 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질의회답('05.8.23. 중앙선거관리위원회)

「공직선거법」 제 86조 제3항, 제113조(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), 또는 제114조 (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)의 규정에 위반

### ○ 행위가능 조건

-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 '기부행위' 예외 조항에 적용
-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자체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
- 울품구매·공사·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당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

## □ 개정이유

우리구 홈페이지는 이벤트 및 마일리지 운영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가 없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구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항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정정보의 갱신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해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## □ 주요내용

- 정의를 보완하고 추가함(안 제2조 3,5,8,9,10호)
-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및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한 공개여부 결정 규정을 마련함(안 제8조)
-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4조의 2)
- 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고자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14조의 3)
- 홈페이지를 통한 세금 등의 납부에 필요한 제도 및 시스템 마련과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4조의 4))
-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정정보의 갱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와 감면기준을 마련함(안 제14조의 5, 제14조의 6)
-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규정과 예외사항 등을 정함(안 제18조)
- 마일리지의 부여기준을 정함(안 별표 1)

## □ 향후 추진일정(예정)

- 입법예고(20일) : 5. 23~6. 12
- 조례·규칙심의회 의결 : 6. 14
- 구의회 정례회 심의 : 6. 20 ~ 7. 9
- 공포 : 7월 중순

첨부 1.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1부.  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7. 11.
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. 6. 15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7. 6. 18.
- 다. 상정일자 :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(2007.7.3)  
상정, 심사, 가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박도식 교통행정과장)

### 가. 제정이유

- 「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주민의 자전거이용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요내용

-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기본책무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 (안 제3조 및 제4조)
- 마포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(안 제5조)

- 공원, 하천, 지하철역, 버스정류소,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의 우선설치와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, 주차요금 등 운영방안을 규정함 (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8조, 안 제10조)
-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정비소 및 대여소 운영, 시범기관의 지정과 운영, 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 기타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1조 내지 제14조)

### **3. 검토보고의 요지(한두호 전문위원)**

- 동 조례안은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「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- 동 조례안은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「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- 안 제3조 및 제4조에 마포구청장의 기본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 안 제5조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,
- 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8조, 안 제10조에 지하철역, 버스정류소, 공원 등 많은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,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, 주차요금, 운영 방안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 자전거 정비소, 대여소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고, 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및 자전거 이용자와 자전거 이용

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.

- 이상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 제8조 중 “....자전거 주차장의 관리·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“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·운영을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어 두고있음.
- 이는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·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마포구가 직접 운영할 가능성은 매우 적고, 공단이나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위탁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있어야 하며, 또한 주민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시행방법과 보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# 5. 토론요지 : 없음

#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#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#### 8. 기타 : 없음